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5
----------	-----

제출년월일 : 2023. 8.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우리 군 포상 규정을 현실화하고 군민대상 시상부문을 통합하여 포상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실효성 없는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단어 삭제
- 나. 군민대상 시상부문 통합·축소를 통한 군민대상 가치 제고
- 다. 공적심사위원을 군수가 임명하게 함으로써 공적심사의 탄력성·유연성·시의성 확보
- 라. 그 외 중복되거나 성차별적 요소 및 문구, 띄어쓰기 등 수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3. 5. 9. ~ 2023. 5.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요구 미반영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포상조례”를 “평창군 포상 조례”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감사장”을 “감사장, 공로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을 “포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 효자, 효부, 열녀 그외 선행자”를 “자”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로장) 공로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1. 지역개발부문
2. 문화체육부문
3. 사회봉사부문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급, 상패, 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5조와 제6조의”를 “제5조부터 제6조의2까지”로, “실·과장,담당관”을 “실·과장,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실장, 위원은 행정과장·복지정책과장·민원토지과장·산림과장·건설과장이 되며, 간사는 서무담당이 되고,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를 “포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간사는 서무담당이 되고,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감사장”을 “감사장, 공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평창군포상조례</u></p> <p>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u>감사장</u>, 상장, 군민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다만, 군민대상, 모범공무원 포상, <u>향토주인상</u> 및 <u>향토일꾼상</u>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p> <p>제5조(표창장) ①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삭 제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u>솔선수범한 자, 효자, 효부, 열녀</u> 그외 <u>선행자</u> <p><신 설></p>	<p><u>평창군 포상 조례</u></p> <p>제 4 조 (포 상 의 종류)----- <u>감사장</u>, <u>공로장</u>----- ----- ----- <u>포상</u>----- ----- -----.</p> <p>제 5 조 (표 창 장) ①----- -----.</p> <p>1. (현행과 같음)</p> <p>3 ----- ----- ----- <u>자</u></p> <p><u>제6조의2(공로장)</u> 공로장은 <u>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u></p>

제7조의2 (군민대상) ① (생략)

②수상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문별로 선발 시행한다.

1. 일반지역개발부문
2. 문화부문
3. 체육부문
4. 향토봉사부문
5. (생략)
6.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부문

③ (생략)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생략)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군의 실·과장,담당관 및 산하기관의 장, 유관기관의 장,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2 (군민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1. 지역개발부문
2. 문화체육부문
3. 사회봉사부문

<삭 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부터 제6조2까지-----

----- 실·과장, 담당관 -----

사회단체의장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위원은 행정과장·복지정책과장·민원토지과장·산림과장·건설과장이 되며, 간사는 서무담당이 되고,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생략)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함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제7조제2항 규정의 수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간사는 서무담당이 되고,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7조의2
제2항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 평창군 포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별지 제2호서식(감사장, 공로장)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20 년 월 일

평창군수 ○ ○ ○ (직인)

제 호

공 로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공 로 문)

20 년 월 일

평창군수 ○ ○ ○ (직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과장 이영배
연락처	(033) 330 - 2210